

의안번호 제1518호	<b>[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1. 31.(목)
- 나. 제출자 : 신성봉 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2. 13.(수)

## 2. 제안이유

-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의 및 출장보고서 작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조항 삭제(안 제5조)
- 나.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의무화(안 제11조)
- 다. [별지 제2호 서식]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작성요령 개정

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일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,
-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